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. 2. 5 선고 2019가단65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0. 10. 21 선고 2020나733 판결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. 2. 5 선고 2019가단656 판결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20. 1. 15

판 결선고 2020. 2. 5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묘지 26평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71. 10. 11.
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망 D(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대장 기재 성명 'E')와 망 F는 형제이다.

피고는 망 D의 아들이고, 원고는 망 F의 아들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는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.

다.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북 의성군 G 전 2,734㎡(이하 'G 토지'라 한다)에는 망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.

망 F는 1980. 8. 21.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2000. 1. 8. G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를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은 1999. 12. 30. G 토지 등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. 위 상속재산분할협 의서에 기재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3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망 F는 1971. 10. 11. 경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G토지를 400,000원에 매수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1971. 10. 1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1971. 10. 11.경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4, 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 F가 1971. 10. 11.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다면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경료하였을 것인데, 망 F는 이 사건 토지는 놔둔 채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점, ② 원고를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상속재산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, 피고가 1971. 10. 11.경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슬기